

# 하남시 공무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94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7일

발의자 : 이영아 의원

## 1. 제정이유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근로자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채용, 보수, 복무관련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5.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 17. ~ 1. 25.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하남시 공무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복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하남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무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무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무원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 ①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종의 분류)**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제14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하남시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6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17조(휴직 등)** 시장은 공무원의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출산, 건강증진 등을 위한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훈련)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4조(안전관리) 공무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25조(재해보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하남시 공무원 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동(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라 함은 시 예산으로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조직 및 정원관리 부서를 말한다.
4. “예산부서”라 함은 예산을 관리하는 혁신기획관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라 함은 공무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 등을 말한다.
6. “인사부서”라 함은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회계부서”라 함은 공무원의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상시 ·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공무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규정은 공무원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본청 등에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과 같다.

1. 일반사무원 :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2. 상담실무원 : 민원인 상담 · 안내 등의 업무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위생실무원 : 조리 · 급식 · 이미용 등 위생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보건실무원 : 의료업무를 지원하고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현업실무원 :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6. 환경미화원 : 도로 · 가로청소, 쓰레기 폐기물수거 · 처리 및 청사 내 쓰레기 수거 ·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7. 학교급식지원센터종사자 : 학교급식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② 제3조 제2항의 청원경찰은 시설물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③ 공무직은 세입 · 세출, 보상업무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④ 공무직의 직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전보 및 직종변경)에 따른다.

(이하생략)